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
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부자의 납부편의 증대를 위해 전자송달 서비스 방법을 확대하고, 납부자 권익 향상을 위해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및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하며,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허가를 심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 근거 법률을 통일하기 위해 체납 시 이 법을 준용하는 개별법령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부자의 납부편의 증대 및 권익 향상

- 1) 전자송달 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 민간정보통신망을 추가로 규정(안 제2조 개정)
- 2)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외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안 제17조 개정)

나. 체납징수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개선

- 1)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등록·신고 등 기타 행정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체류 관련 허가’를 ‘체류 관련 허가 등을’로 규정(안 제6조 개정)
 - 2) 체납자가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또는 합병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제19조 개정)
 - 3)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결손처분 용어 변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게는 면책적 의미인 “결손”으로 처리하고, 그 외 무재산 체납자 등에게는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별도 규정하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명시(안 제19조 신설)
- 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근거 법률 통일을 통한 체납행정의 효율성 제고
- 1) 체납처분 시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등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범위에 “환수금”을 추가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안 제2조, 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부담금 및 변상금”을 “부담금, 변상금 및 환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1의3. 제1호가목의 “환수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제2항에 의해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제6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손처분자”를 “정리보류자”로, “결손처분액”을 “정리보류액”으로, “결손처분 자료”를 “정리보류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결손처분한 지

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결손처분”을 각각 “정리보류”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상속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기가 도래하여 체납이 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기가 도래하여 체납이 된 후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계속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풍수해, 화재, 전쟁,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를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9조) 중 “제27조, 제3장 제2절제3관”을 “제3장 제2절제3관”으로,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제5절까지”로 하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정리보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결손으로 처리하며,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및 제82조의2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⑥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⑦ 법률 제1813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⑪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⑫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 법률 제1805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를」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⑪ 법률 제1802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⑫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⑭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0조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⑯ 도시공원 및 논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⑰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를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⑳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로 한다.

㉞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㉟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㊱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㊲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㊳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㊴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㊶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로 한다.

㊷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㊸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㉞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㉟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시·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시·도지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㊱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㊲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㊳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11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㊴ 장애인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㊵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㊶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㊷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⑥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④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④⑨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0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로 한다.

<51>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2>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5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4> 법률 제1805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로 한다.

<5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56> 후계농어업인 및 천영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 ----- ----- ----- ----- ----- ----- -----.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u>부담금</u> 및 <u>변상금</u>	가. ----- ----- ----- <u>부담금, 변상금</u> <u>및 환수금</u>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1의2. (생략)	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호가목의 “ <u>환수금</u> ”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p>2. ~ 13. (생략)</p>	<p>말한다.(같은 법 제5조제2항에 의해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p> <p>2. ~ 13. (현행과 같음)</p>
<p>14.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p>	<p>14. -----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p>
<p>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p>	<p>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 ----- ----- ----- ----- ----- ----- 정리보류자----- ----- 정리보류액-----</p>

<p>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정리보류 자료----- ----- ----- ----- ----- ----- -----</p>
<p>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p>	<p>1. ----- --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 ----- -----</p>
<p>2.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p>	<p>2. (현행과 같음) ② ----- ----- ----- ----- 허가 등 ----- ----- -----</p>

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③ -----
--- 정리보류 -----

-----.

④ -----
--- 정리보류 -----

-----.

제9조의3(상속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기가 도래하여 체납이 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기가 도래하여 체납이 된 후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계속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 ⑤ (생략)

<신설>

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

-----.

1. 풍수해, 화재, 전쟁,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정리보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결손으로 처리하며,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제19조의2(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 제3장제2절제3관 -----

----- 제5절까지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77